수시 공시 - 신탁계약서・투자설명서 변경

대상 펀드 :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]

변경시행일: 2013년 6월 12일

신탁계약서 변경

● 변경 사유 : Class I 및 Class W 신설,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반영 등

● 변경대비표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투자신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
탁의 명칭 및	는 다음 각호와 같다.	는 다음 각호와 같다.
종류)	1~7. (생략)	1~7.(현행과 같음)
		8. Class I 수익증권 :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
		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
		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
		<u>금 전용 수익증권</u>
		9. Class W 수익증권 :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
		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
		<u>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</u>
제10조(수익증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
권의 발행 및	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	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
예탁)	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	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
	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	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
	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	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
	1~7. (생략)	1~7.(이전과 같음)
		<u>8. Class I 수익증권</u>
		<u>9. Class W 수익증권</u>
제19조(운용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(중략) 10%를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(중략) 10%를
및 투자제한)	초과하여 동일 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	초과하여 동일 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
	가. (생략)	가. (생략)
	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중략), 경제협	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중략), 경제협력
	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	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
	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	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</u>
	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	<u>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
	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	<u>또는 주택저당증권(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
	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	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「한국주
	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	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
	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	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
	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	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

	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	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
	30%까지 투자하는 행위	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
	다. (생략)	다.(현행과 같음)
제39조(보수)	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	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
	는 (중략)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	(중략)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
	금액으로 한다.	로 한다.
	1~7. (생략)	1~7.(현행과 같음)
		8. Class I 수익증권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
		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
		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
		0.15
		9. Class W 수익증권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
		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
		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
		0.15
제41조(환매수	② Class A, Class C, Class C1, Class C2, Class	② Class A, Class C, Class C1, Class C2, Class
수료)	A-e, Class C-e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원	A-e, Class C-e, <u>Class I, Class W</u> 수익증권의 환
	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	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
	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	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
	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	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
	바와 같이 부과한다.	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
	1~2. (생략)	1~2.(현행과 같음)
부칙	-	이 신탁계약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
제1조(시행일)		한다.

<u>투자설명서 변경</u>

● 변경 사유 :

- Class I 및 Class W 신설
- 의결권공시방법 기재, 자본시장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기타 자구 정정 등

● 변경대비표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	-	Class I : AJ409
의 명칭		Class W : AJ410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	-	Class I : AJ409
의 명칭		Class W : AJ410

2. 집합투자기구		2013.6.12
의 연혁		- Class I 및 Class W 신설
		- 의결권공시방법 기재, 자본시장법령 개정
		내용 반영 및 기타 자구 정정 등
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
	- 2012.11.30 기준	- 2013.5.31 기준
	 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
	-	- 과거 내용 보완
6. 집합투자기구	-	Class I 및 Class W 내용 추가
의 구조		
8. 집합투자기구	나. 투자제한	나. 투자제한
의 투자대상	○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	○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
	 채증권 (중략)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	 채증권 (중략)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
	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	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
	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	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
	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
	 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	│ │ 권(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
	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	
	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	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
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
	··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상장지
	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	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
	투자하는 행위	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
11. 매입, 환매,	가. 매입	가. 매입
전환절차 및 기	(2) 종류별 가입자격	(2) 종류별 가입자격
조가격 적용기	-	· Class I :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
근		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
		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
		용 수익증권
		- Class W 수익증권 : 법 및 이와 유사한
		의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
		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
	나. 환매	나. 환매
	· · · · · · (3) 환매수수료	(3) 환매수수료
	-	Class I 및 Class W 내용 추가
	(5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	(5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
	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	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
	지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	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
	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	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
	··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··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CTE	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
		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
		를 한 경우
	<u> </u>	= = 01

13. 보수 및 수	_	Class I 및 Class W 내용 추가	
수료에 관한 사		Siese 1	
항			
	└으		
2. 연도별 설정		2012.8.14 ~ 2013.5.31 기간 현황 업데이트	
및 환매 현황		,	
3. 집합투자기구	가. 연평균 수익률	가. 연평균 수익률	
의 운용실적	- 2012.8.13 현재 기준	- 2013.5.31 현재 기준	
	나. 연도별 수익률	나. 연도별 수익률	
	- 2012.8.13 현재 기준	- 2013.5.31 현재 기준	
	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
	- 2012.8.13 현재 기준	- 2013.4.30 현재 기준	
제4부 집합투자기	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
에 관한 사항	- 2012.3.31 기준	- 2013.3.31 기준	
	라. 운용자산규모	라. 운용자산규모	
	- 2012.11.30 기준	- 2013.5.31 기준	
3. 기타 집합투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
자기구 관련회	- 회사명 : 나이스채권평가	- 회사명 : NICE피앤아이	
사에 관한 사항	- 인터넷홈페이지 : www.nicepricing.co.kr	- 인터넷홈페이지 : www.nicepni.com	
제5부 집합투자기	구 공시에 관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	나. 수시공시	나. 수시공시	
의 공시에 관한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	
사항	-	시	
		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	
		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	
		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	
		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	
		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	
		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	
		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	
		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	
		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	
		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	
	•	·	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● 변경 사유 :

- Class I 및 Class W 신설 및 최근 내용 갱신

● 변경대비표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		
5. 운용전문인력	2012.11.30 기준	2013.5.31 기준
6. 투자실적추이	2012.11.30 기준	2013.5.31 기준
Ⅱ. 매입·환매 관련 정보		
1. 보수 및 수수료	-	Class I 및 Class W 내용 기재